

과업지시서

구미시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

2020. 07.

GERI 구미전자정보기술원

I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구미시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행기관

- (주)아이피투비(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과업목적

- 구미시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의 타당성 확보

II

과업의 목적 및 내용

1. 과업 추진배경

- 구미시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서 도출된 우수 특허기술에 대해 지역기업으로의 원활한 기술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2. 과업목적

- 금년 기술이전 계획에 대비하여 향후 개발조건부 기술이전 계약의 기술원 주도의 사전 기술가치평가 필요

- 구미시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 수립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
- 보유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을 도모하여 제한적인 특허 보유 한계 극복
- 구미시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갈 기술 범위 확장

3. 과업의 주요내용

- 기술가치 평가서 1식 × 3건
 - 평가대상특허

특허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주요 발명자
10-2020-0032063	영상 투영 방법 및 시스템	박지용
10-2020-0029237	초음파 세정을 이용한 반도체 기판 세정 방법	김준희
10-2020-0040315	나노 패턴을 갖는 구조체에 기초한 세포 배양기 및 그 생성 방법	박혜빈

Ⅲ 과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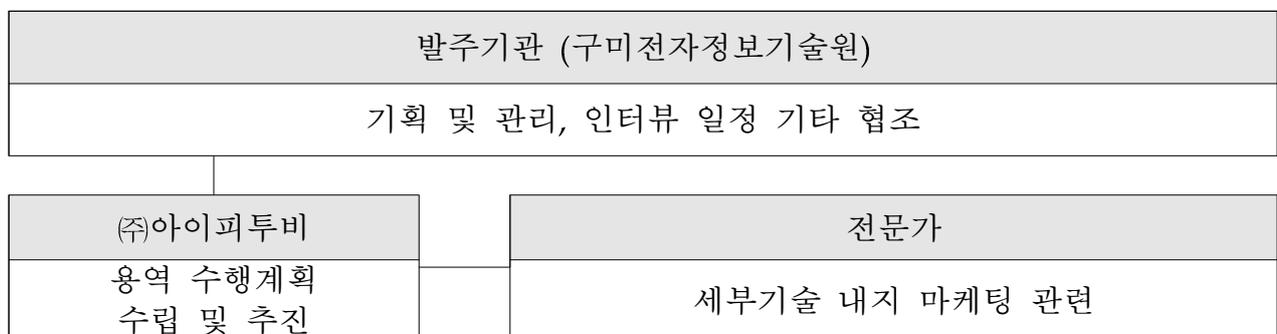
1.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내용적 범위 : 기술이전 대상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경제성 및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 기술가치평가 수행

2. 과업의 세부 내용

- 기술가치평가 수행
 - 수요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 NPV 방식
 - 수요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로열티 공제 방식
- 대상 특허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및 기술 활용 방안 분석
 - 대상 특허의 신규성, 차별성 분석
 - 적용 가능 시장의 정의와 시장의 환경 분석
 - 기술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산출과 기술 가치 추정

3. 과업의 추진방법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이행 기준

- 1) 본 과업지시서는 「구미시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으로 도출된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용역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호협회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 2) 본 과업지시서는 「구미시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으로 도출된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용역으로서 기술이전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본 용역의 결과물은 “갑”과 “을”이 공동 소유로 한다
- 3) 본 과업지시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필히 반영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4) 필요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 5)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6) 과업수행 상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및 도·시·군 등의 공식자료와 통계를 인용하고, 이 경우 “을”의 요청시 “갑”은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협조를 지원한다.
- 7)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한다.
- 8) 최종 성과자료에 대해 “을”의 하자로 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9) “갑”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등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②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10) “을”은 용역수행 중 “을”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과업참여 연구진

- 1) “을”은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 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 기간 중 “갑”이 추천하는 전문가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 3) “갑”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에 대한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사항

-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 자료는 “갑”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과업내용 중 보완사항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동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용역수행 주관기관은 모든 참여 연구원의 보안각서 징구)
- 4)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 5)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6) 승인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은 과학적·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7)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른다.

- 8) 용역과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용역수행자와 협의 하에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 정책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3)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 4)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3) “갑”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 4)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6.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동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1) 정부기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누락되어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내용을 보완한다.
-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4)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며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항상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 완료시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V 과업 일정 및 성과품 제출

□ 과업 추진일정

- (~'20. 7월 초) 착수
- (~'20. 7월 중) 발명자 인터뷰 완료
- (~'20. 8월 중) 기술가치평가 3개 초안 완료
- (~'20. 9월 초) 기술가치평가 수정 보완
- (~'20. 9월 말) 최종보고서 검수

□ 성과품 제출

- 제출 시기 : 계약만료일까지
- 제출 내용 : 기술가치평가 결과보고서 각 1부